성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6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정이유

○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나. 세입·세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다. 부담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없음

5. 참고사항

o 관련법령 :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
o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o 예산관련 : 해당없음
o 협의사항 :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완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 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 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기반시설"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.
2. "기반시설부담금" 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 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특별회계의 설치)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 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군 귀속분
2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
3. 국가의 출연·보조 또는 융자금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한다.

제6조(부담금의 사용제한) 군수는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 및 관리) 이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성주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